

**Q** 동료 교직원 자녀의 돌잔치에 선물을 해도 될까요?

**A** 가능합니다.

적부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까지는 제공이 가능합니다. (법 제8조제2항)

다만, 선물을 받는 교직원이 인사·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적부관련성이 있다면 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(농축수산물은 1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. (법 제8조제3항제2호))

※ 인사·평가·감사 기간에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목적 범위를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제공할 수 없음

※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는 결혼, 장례에 한정되며,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부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은 제공할 수 없음

**Q** 국·공립 대학 교수가 외부강의를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**A**

'18. 1. 17.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교 교수는 국·공립과 사립에 관계없이 **시간당 100만원** 까지 외부강의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고,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. (시행령 별표2)

※ 다만, 소속기관별 행동강령의 사례금 상한액이 더 엄격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소속 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



국민권익위원회

www.acrc.go.kr



국민신문고

국민신문고 110

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



대학 교수·직원

# 청탁금지법

## 바로 알기 Q&A



국민권익위원회



**Q** 대학의 명예교수, 겸임교수, 시간강사, 조교가 공직자에 해당하나요?

**A** 조교만 공직자에 해당합니다.

「고등교육법」에서 명예교수, 겸임교수, 외래교수, 시간강사 등은 '교원 외'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, 같은 법에서 '교직원'으로 정하고 있는 조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. (법 제2조제2호)

※ 대학의 시간강사는 「고등교육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이 시행('19. 1. 1. 예정)되어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면 공직자에 해당할 수 있음

**Q** 교수가 논문심사를 하고 있는 다른 대학원 학생으로부터 논문심사 중에 도시락 세트를 받아도 될까요?

**A** 안됩니다.

심사대상자로부터 법정 심사료가 아닌 식사 등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·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(법 제8조제3항제2호)

**Q** 교수가 본인의 강의를 평가하는 학생에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?

**A**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
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금품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제공하는 간식이나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 (법 제8조)

※ 다만,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할 당시의 교수와 학생간의 상황, 제공방식과 목적 등에 따라 '18. 4. 17.부터 시행되는 개정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

**Q** 교수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개최하는 사은회에 참석하여 식사나 선물을 제공 받을 수 있나요?

**A** 가액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.

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모두 종료된 후 사은회가 열린 경우라면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. (법 제8조제3항제2호)

※ 식사와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라면 합산해서 5만원 이내여야 하고, 식사 3만원과 선물 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넘을 수 없음

**Q** 교수가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?

**A** 졸업생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졸업한 학생과 교수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졸업생이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(100만원 이하)은 받을 수 있습니다. (법 제8조제2항)

다만, 상시 지도·평가의 대상인 재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은 사교·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습니다. (법 제8조제3항제2호)

따라서,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졸업생이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식사나 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졸업생이 재학생에게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함께 교수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한다면 재학생뿐 아니라 위반행위에 가담한 졸업생도 제재 대상에 해당(과태료 대상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2조, 형사처벌 대상은 「형법」 제30조 적용)

**Q** 교수가 소속 학교 총장에게 상품권을 선물해도 될까요?

**A** 안됩니다.

'18. 1. 17.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품권, 공연 티켓, 기프트콘 등의 유가증권은 금전과 같이 취급하여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 (시행령 별표1)